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위한 긴 여정

Laborious Journey to Establish an Architects' Office

신 현 보 Shin, Hyunbo

정회원,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Hannam University

unjo.shin@hnu.kr

건축사사무소 개소까지의 여정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는 ‘건축사가 되는 과정’이 안내되어 있다. ‘1. 건축사자격시험(합격)→2. 건축사등록원(등록)→3. 건축사사무소(개설)→4. 건축사 회원가입’. 정확히는 건축사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과정이다.

사실 안내된 것보다 훨씬 길고 험난한 여정이 생략되어 있다.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전문대학원 등 인증 교육과정 이수 후 3년간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실무수련을 거쳐야 건축사시험 ‘응시 자격’을 얻는다. 이어서 낮은 합격률을 자랑하는 건축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채수, 삼수, 혹은 그 이상도 흔하다.

시험 합격 이후는 협회의 안내대로다.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고, 관할 지자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를 열 수 있다. 여기에 2022년의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협회 가입이라는 과정이 더해졌다. 더 보태어 면접 등을 통한 면허제 추진 이야기까지도 조금씩 들려온다.

긴 과정에는 그만큼 많은 이들이 관계하게 되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된다. 개인 혹은 단체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논쟁이 벌어진다.

대학교육의 정체성

예고된대로 개정된 건축사자격시험 제도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제는 인증교육 과정과 실무수련을 거친 사람들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들은 2002년에 5년제 신입생을 받으면서 이미 준비를 시작했고,

2005년에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설립됐다. 건축계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2027년을 준비해왔다.

교수로서 인증제도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커리큘럼 제한이나 획일화 등에 대한 지적도 많지만 시스템은 계속 진화해왔다. 가이드라인은 보기보다 많은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인증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학교와 평가위원들 간에 시각차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회차를 반복하며 합리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증제도가 건축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줬다는 시각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보다는 건축교육이 자격증 취득 과정의 일부가 된 것이 아쉽다. 인증제 학위가 건축사의 선행조건인 상황에 대해 되물어야 한다. 건축사 자격이 건축가로서의 필수적인 부분인가? 건축학과 졸업 후 건축가로서의 길이 건축사사무소 개소뿐인가? 연구나 비평 등 이외의 다양한 진로를 위한 교육이 생략되고 있지는 않은가? 대부분의 학과명이 ‘건축’학과이지, ‘건축사’학과는 아니지 않은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건축서비스’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증제도를 통해 건축교육의 전반적인 질이 높아졌다고 해도, 위 건축서비스 영역 중 자격시험과 연계되지 않는 부분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현 자격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각 대학의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학제 다변화 가능성

비인증 학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의 졸업생들이 2027년부터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다. 해당 학생들이 일찌감치 건축계를 떠날 수 있고, 결국엔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축전문대학원 진학을 통한 길이 열려있지만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사보'의 수가 줄어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는 문제로 이어진다. 해결을 위해 TF 등에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의 중심이 비인증 학제 졸업생들의 '구제책'에 머무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논의되는 대안 중 하나는 인증학위 졸업생과 비인증학위 졸업생 간에 실무수련 기간 차이를 두는 것이다. 비인증 학제 졸업생에게도 추가적인 실무수련을 통해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증교육과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당 기간의 실무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그런데 정말 인증교육의 내용이 실무수련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그 생각이 20년간 준비해온 시스템의 핵심에 닿아있는가?

이는 교육과 실무를 이어진 단계로서 하나의 시스템에 두려는 20년간의 노력과 반대 방향의, 또다시 교육과 자격을 분리하는 시각으로 보인다. 현 시스템의 보완책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또 하나의 시스템 설립에 가깝다.

논의를 주도하는 기성세대는 대부분 인증제도 이전의 교육을 받고 건축사가 됐다. 반면에 지금의 인증세대는 교육과 자격을 하나의 선상에 둔 시스템에서 공부하고 건축사가 된다. 이들이 신진 건축사 그룹을 형성해가고 있다. 그런데 교육과 자격이 분리됐던 시절의 세대가, 지금에 와서 또다시 과거와 유사한 제도를 거치는 건축사를 만들려 한다. 세대로 갈린 건축계가, 같은 세대 내에서도 또다시 자격제도에 따라 갈라지게 된다. 인증 세대는 위에서 치이고, 옆에서도 치일 것만 같다.

20년간 준비해온 시스템에 문제제기가 된 상황을 이왕이면 기회로 삼아,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제 다변화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논의의 시작은 5년제 학위과정 졸업생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부터여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5년제 인증 졸업생에게 학위와 건축사 자격을 동시에 수여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해당 대학 졸업생들이 해마다 건축사가 된다면, 아니래도 건축사 수 증가와 건축서비스 품질 향상을 반비례 관계로 보고 있는 건

축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학위와 건축사자격을 일치시키려면 인증평가항목에서도 실무에 관한 내용을 지금보다도 강화해야 할텐데, 이는 인증교육이 실무에 너무 치중되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5년제 인증과정을 학석사 통합의 3+2 형식으로 개설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대신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수련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졸업 이후의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학계의 노력만을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학교별로 지금보다 다양한 학제를 제공하고, 이에 맞추어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한다면 조금 더 많은 선택지가 만들어진다.

지금의 학사학위 5년제 과정을 유지하는 대신 실무수련 기간을 줄여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인증교육을 4+1로 구분하여 4년간은 대학 본연의 건축 전반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 대신에 최종 1년간은 지금보다 더 강화된 실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실무수련기간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4년제 학제를 인증시스템의 큰 틀 안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축소된 패키지의 인증교육 기준을 마련하여 3,4년제 대학에서도 인증학위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에 현재의 논의대로 추가적인 실무수련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면 현 시스템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들이 예산을 마련하여 인증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실무수련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현재 교육과정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관리 하에, 실무수련은 건축사등록원(대한건축사협회)의 관리 하에 있다. 부족한 교육을 실무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고는, 인증원의 관리업무를 등록원의 관리업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려면 인증원과 등록원의 요구사항에 교집합이 생겨야 한다. 교집합 부분에 대해 인증원과 등록원이 상호 검증하여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가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실무수련 내용의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제시한 대안들은 공통적으로 인증원이 할 일의 증가를 가져온다. 하지만 국내 학위과정을 다변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건축사 수 제한의 모순

실무수련까지 거쳤다면 이제 여정의 절반 정도를 온 셈이다. 이제 그 어렵다는 건축사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문제에 오류가 있거나 했던 특정 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10~15% 정도의 낮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축사 수와 건축서비스의 품질에 관련된 논쟁이 있다.

현재는 기존의 예비시험 폐지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시적으로 연 2회의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회 시행 첫해에 건축계는 크게 시끄러웠다. 건축사가 무분별하게 많이 나온다는 항의, 이렇게 되면 건축사 수가 과다하게 되어 전반적인 건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한해에 두 번씩 준비하다 보면 응시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시험응시를 위한 직원들의 이탈로 인해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도 가중된다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쉽게 공감하지 않는다.

합격률부터 살펴보자면, 논란의 첫 해를 제외하면 이후 계속 두 번씩 시험을 치뤘어도 예년보다 두배의 건축사가 배출되지는 않았다. 역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해에 배출되는 건축사의 총 인원은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건축사의 수가 많아지면 안되는가? 정말로 건축사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 건축의 질이 떨어지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높은 질의 건축을 해왔는가? 과거에는 덩핑 경쟁도 없고, 수준 높은 건축사들로 구성된 건축계에서 수준 높은 건축을 주로 만들어왔는가? 오히려 건축학인증과정을 거친 응시자들이 건축사가 되고 개소하여 자신의 건축을 해나가면서 건축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 건축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건축사의 수가 늘면 안된다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비인증 학제 졸업생들에게도 시험 응시자격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겹치기 때문이다. 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자는 말은 건축사보의 숫자를 늘리자는 말이 된다. 건축사보의 수는 늘려서 직원 수급은 원활히 하되, 그들이 건축사가 될 확률은 줄여서 개설사무소간의 경쟁은 낮게 유지해야 하는가? 희망은 늘리고 열매는 줄여가는 것이 건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일까?

업역확대의 방향

이런 태도는 결국 건축사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것이다. 건축계에 충분한 일량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용역비가 너무 저평가되어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제한된 밥그릇을 가지고 동료 건축사와 싸우기보다는 밥그릇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사실 당연한 얘기고, 건축사협회에서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탐탁치는 않다.

예를 들어, 소규모건축물의 감리분리는 설계와 감리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건축사의 업무를 내부에서 쪼개어 나눠가진, 업역확대와 상관없는 방향의 제도다. 10여년 전 건축사 자격증 수여식에서의 특강에서 들었던, '신진 건축사들은 설계에 집중하고, 감리 분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업역은 선배 건축사들의 몫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강연 내용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연이은 건설현장 사고들을 계기로 강화된 해체감리업무 등 안전관리 업역으로의 확대는, 시공자나 구조기술사들의 영역으로 받을 들인 모양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안전대책은 설계 과정 자체에서 더 밀도있게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업역 확대 방향이 건축 허가 이후의 과정들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마음아프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정의처럼, 건축의 업역은 설계 이전 단계에도 넓게 미쳐있다. 프로젝트 전반을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기획자로서 건축가의 역할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전 연구용역이나 건축기획 등은 건축사들이 업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 많은 건축사들이 이 영역에 접근하고 있지만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우가 많다. 해체감리 교육만큼이나, 이 부분에서도 역량 강화를 위한 협회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중심이 되는 설계영역을 다지는 것은 당연히 놓칠 수 없는 과제다. 민간시장 업무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고, 설계자를 고려한 표준계약서의 제안이나, 공공건축 제도개선 연구 등이 새건축사협의회 등 관련단체나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반갑다.

같은 의미에서 해외 설계시장 진출도 협회가 신경써줘

야 할 부분이다. 외국 건축사의 경우 공동수급 협정 등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국내에 충분한 일거리가 없다면 우리도 해외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건축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적극적으로 조성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도 해외 시장에 많은 요구들을 해가면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다.

의무가입과 윤리규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 등록을 마치면 이제 자신의 실적을 쌓아가며 활동할 수 있다. 스스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싶다면 관할 지자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면 된다. 작년부터 여기에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됐다. 2022년에 건축사법이 개정되었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의 건축사협회 가입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대한건축사협회를 유일한 협회로 인정하도록 변경하였다.

몇가지 이유에서 이 개정안 추진에 반대했었다.

첫번째는 의견개진의 다양성 저해다. 의무가입 관련 조항이 추가되는 자체도 탐탁치 않았지만 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추가적인 건축사협회를 만들 수 없게 된 부분이다. 사무소 개설을 위해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 오히려 복수의 가입대상이 있어야 하고, 건축사는 그 단체들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건축사가 한목소리로 통합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건축계는 그렇지 않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회간의 논의와 경쟁을 통해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모두를 강제로 하나의 우산 아래 두는 것을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두번째는 기존 건축계에 대한 불신이였다. 의무가입 추진의 표면적 이유 중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축사들에 대한 협회의 징계권 확보가 있었다. 의무가입이 법제화되면 협회원 제명이 곧 사무소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게 되어, 건축사협회가 강한 제재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정관에 명시된대로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가 올바른 자정기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징계를 내릴 사람과 받을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명확한 집행이 될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때문에 개정 건축사법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과 윤리규정을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다. 이제 협회의 정관과 윤리규정은 건축사법의 연장선상에서의 책임을 갖게 됐다. 이를 위해 협회는 건축 각계가 참여한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강화된 윤리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의무가입의 대상은 개소 건축사다. 협회의 정관과 윤리규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개소건축사뿐이다. 개소하지 않은 사무소 소속의 등록건축사들도 건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역시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건축사 윤리선언을 준수해야 하기는 하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이 많다. 두 단계의 서로 다른 윤리규정 적용이 만들어졌다. 의무가입 대상자에 대한 규제는 건축사협회의 정관으로 넘겼더라도, 시행규칙의 건축사윤리선언의 내용도 함께 체계를 갖추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성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건축사 제도

지금까지 대학에서부터 개소건축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 논쟁들을 돌아봤다. 물론 어떤 법이나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

건축사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지만 건축기본법은 2008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2014년에야 만들어졌다. 지금 우리 건축계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업역을 주로 삼아온 기성 세대와,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확장 정의된 건축의 업역을 바라보는 신진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건축사 제도도 이 상황에 발맞출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업역을 ‘건축사’의 정의 아래 강제로 통합하려는 시도보다는 여러 업역과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넓은 관을 만들어주려는 관점이 더 필요하다. ㉓

필자 소개

신현보 필자는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며, 소보건축사사무소의 소장이다.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의 등록건축사다. 고려대학교 건축공학을 졸업하였고, 네덜란드 TU Delft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